

第48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3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1月17日(金) 午前8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5·18光州市民虐殺者處罰을 위한特別法制定促求決議案

審査된案件

1. 5·18光州市民虐殺者處罰을 위한特別法制定促求決議案(金榮植議員外 12人 發議) 1 面

(08時08分 開議)

○委員長 俞鎮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전대통령의 수감되는 모습을 여러 위원님들은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반되게 새벽부터 나와서 또 한번 우리는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5·18光州市民虐殺者處罰을 위한特別法制定促求決議案(金榮植議員外12人 發議)

(08時09分)

○委員長 俞鎮武 의사일정 제1항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 위한특별법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한 김영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萬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委員長 俞鎮武 네. 하세요.

○鄭昌萬委員 오늘 지금 8시부터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아침부터 꼭 일찌기 해야 되는 원인과 또 이것이 이렇게 다급한 문제인가, 이것이. 조금더 차분하게 해서 시간을 두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해야 될 원인이 무엇인지 위원장은 답변 해 주세요.

○委員長 俞鎮武 위원장더러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鄭昌萬委員 네. 소집을 하셨으니까요.

○委員長 俞鎮武 어제 여러위원님들이 오늘하기로 결의를 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鄭昌萬委員 네. 소수의 의견도 감안을 해서 얘기는 어제 그런 얘기만 들렸지, 의견을 누가 청취를 했습니까? 좀 위원이 아무리 늦어도 의결을 해 가지고 8시면은 8시라든지, 아무리 위원장이나 또 의장이나 간사님들의 직권속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수의 의견을 물어봐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성북구내에서 지금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어떤 다급한 문제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심사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俞鎮武 지금 정창만위원님이 진정으로 몰라서 위원장한테 묻는다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본 사항을 의장님이 재가를 해 주셔서 오늘 집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님한테 여쭙보세요.

○金光植委員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1대 때 이렇게 8시에 변칙적으로 상임위를 한 일이 있습니까? 국회나 어디서봐도 나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차수변경은 해서 하는 것은 보았어도. 그러면은 우리 회의가 절차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러면은 승낙을 해서 이 회의를 소집한단 말입니까? 절차에 문제가, 하자가 있으면은 원인이 무효가 되는데요.

○專門委員 宋 鍊 어제는 아마 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산회를 하면은 그 날을 회의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로 아마,

○金光植委員 그런데 그 다음날인데 우리가 평상 회의다, 근무시간 업무는 평상 9시가 기준이라고요. 그러면은 8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절차에 무슨 회의에 하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專門委員 宋 鍊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원칙을 말하자면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일없으면은 평상적으로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공무원 일과시간외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은 공무원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공무원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하고 관계된 일 같으면은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합의가 되면은 일과시간외에 또는 일요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金光植委員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선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례. 선례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金順權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같은 경우는,

○委員長 俞鎮武 김순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光植委員 가만히 있어요. 답을 남은 구하는데. 무슨 남 발언하는 중에 가로채고 그래요.

○金順權委員 발언을 빨리 빨리 끝내세요.

○專門委員 宋 鍊 그리고 또 이것은 공무원하고 관계없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소집을 8시에 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植委員 합의를 했더라도 하자가 있으면은 허락을 하지 말아야죠.

○委員長 俞鎮武 하자가 없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하자가 없단니까요. 김영식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萬委員 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하지 않았지않습니까?

○羅光洙委員 정창만위원님, 지금 의도적으로 깡판을 놓자는 겁니까? 뭐니까? 지금.

(장내소란)

○鄭昌萬委員 의사진행 발언했으면은. 아니 물었으면은 답변을 하고서 얘기를 받으면 되잖아요.

○羅光洙委員 답변은 무슨 답변을요. 회의하면 되는 거죠.

○鄭昌萬委員 어제 저녁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柳興先委員 오늘 8시에 하기로 했어요.

(장내소란)

○羅光洙委員 의도적이예요.

○委員長 俞鎮武 정돈해 주세요. 정창만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安敦洙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委員長 俞鎮武 김영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植委員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결의문 낭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委員長 俞鎮武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安敦洙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俞鎮武 안돈수 위원님,

○安敦洙委員 질의에 앞에 아까 김광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의사계에서 답할 수 있는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김광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수변경을 해서 연속해서 하는 예는

있었지만은 오늘 아침 공무원 출근 시간전에 8시에 회의를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누가 안되나를 할 수 있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아울러 차수 변경도 아닌 아침 8시에 공무원 출근시간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다루어야지 되는데 대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비상사태내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를 제외하고 또 우리 불요불급 하지않은 이런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집했다는 것을 해명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俞鎮武 제가 약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약 10분간만 합시다.

(「네」하는 이 있음)

(08時09分 停會)

(08時19分 續開)

○委員長 俞鎮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발언을 정확한 얘기를 의사계장님한테 물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係長 鄭恩秀 네, 의사계장입니다. 관련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3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운영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에 의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설사 좀 감정이 격하시더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아마 오늘 본회에 넘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신 원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

으로 들어가서 결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정창만위원님.

○鄭昌萬委員 이 안건 올라 온 것은 사실 TV나 방송이나 신문기사도 사실 5·18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이번에 TV보면서 상당히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라든지 또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라든지 또한 우리 단체라든지 어느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각자 서명운동을 해서 찬동하시는 분에 의하면 서명을 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단체라든지 법제처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지금 법제처에 국민회의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금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는 우리 성북구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정치적인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결의안은 보류라고 그럴까요? 본회의에 상정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한테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俞鎮武 네, 나광수위원님.

○羅光洙委員 네, 나광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해결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 했을 때는 어느 국민의 한사람도 궤기대회를 할 수도 있고, 국가에 어떠한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래서 이것은 지금 조금전에 정창만위원님 말씀하시피 요즘 제4공화국이나 여러가지 토대로 봤을 때 정말로 그 잔학무도한 신군부는 광주 양민을 학살하고 그 평온을 되찾으려는 광주시민을 어제 밤에도 저를 봤습니다. 그제밤, 어제밤에도 봤을 때 개를 끌고 가도 그렇게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 군부세력에서도 중간에 또 국민에게 충성어린 장성급들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그 일당들은 광주사태를 무참하게 총격을 하고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때 당시 국회에서도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고 또 각계각층에서 각 사회단체에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이 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여기 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밤, 그제밤 봤을 때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이나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어제밤 그것을 보셨다면 정말 노태우, 전두환 일당을 꼭 사법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마음 속으로 가지고 계시겠구나 했을 때 오늘은 차분하게 이 제안설명을 듣고난 다음 잘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자마자 뻔히 아는 일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묻고 했을 때 나는 참담했습니다. 아, 뭔가 편파적이구나, 뭔가 광주학살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람들과 동조자들이구나 이런 마음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오늘 이 회의에 원만히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저는 발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俞鎮武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아까 정창만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鄭昌萬委員 네, 그러죠.

○委員長 俞鎮武 그리고 나광수위원님은 김

영식의원님이 지금 내 놓은 안을 찬성하는 얘기죠?

○羅光洙委員 네.

○委員長 俞鎮武 정창만위원님 말씀하시죠.

○鄭昌萬委員 지금 나광수위원님께서 동조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을 동조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羅光洙委員 뻔히 어제, 중습니다. 어제 우리가...

○委員長 俞鎮武 나광수위원님, 앞으로 위원님들 발언을 얻어서 합시다. 회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편하실 것입니다. 나광수위원님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羅光洙委員 어제 우리가 이 법을 오늘 즉 말하자면 이 제안설명 요지를 오늘 가결하기로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 어제 점심 먹을 때나 또는 이 의장실이나 토의할 적에 여러 말이 오고 가고 하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뻔히 알면서 이것을 뭐 우리가 정치권이나, 뭐 국회에다 미루자, 내가 어제 분명히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했으면 됐지 정창만위원께서는 우리가 할 게 뭐 있느냐? 그랬을 때 구구절절하게 전후사정 얘기를 다 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의도적이 깔려 있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이것을 올라운 자체가 거북스러우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을 그렇게 듣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俞鎮武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시간은 질의시간이고 답변시간을 그 다음에 질의·답변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창만위원님.

○鄭昌萬委員 질의를 하는데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광수위원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동조자들이라느니, 우리가 이것을 좀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데서 다뤄야지 우리가 다뤄가지고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에 대한 어떤 학살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은폐와 동조자라고 우리 의원들을 모독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 동조자를 해서 제거를 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더 나은 분들이 국회라든지 법을 다루는 분이든지 또 지금 법제처에 서류가 계류되었다니까 거기서 하는 것 봐 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인신공격을 한다면 의원들 인신공격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동조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羅光洙委員 아니 뻔히 알면서.

○鄭昌萬委員 뻔히 알다니. 동조자라든지 여기서 의원들을 모독을 하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俞鎮武 나광수위원장님, 정창만위원장님, 감정은 좀 누그러뜨리시고

○鄭昌萬委員 감정을 나게 만들어 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다음 윤만환위원장님 얘기하세요.

○尹晚九委員 방금 5·18 결의안 채택에서 정창만위원과 나광수위원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에 앞서 동조자라는 말씀의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羅光洙委員 그 말씀이 정히 그렇다면 속기에서 삭제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俞鎮武 속기에서 삭제해도 좋죠? 속기사. 아까 동조자라고 한 것.

○鄭昌萬委員 의원들이 전부 동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삭제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羅光洙委員 의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鄭昌萬委員 그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羅光洙委員 그 발언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尹晚九委員 의원들이고 누구고 간에 그것은 좀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어떤 내용인줄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들만의 일이 아니요, 더구나 52만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면에서는 구민의 대표,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냉철하게 생각하시어 과연 5·18이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셔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날 그 시절이 5·18 전날이 저희 아버님 기일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을 광주에 두고 있었습니다. 17일 내려갈려고 전화를 드리니까 못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 가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에 봤고 또 모든 주위 사람들로서 들었고 광주 시민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전 부터 기획돼서 제 4공화국이나 그것을 봤을 때 진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북구민의 52만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참담한 마음에서 저는 이 자체가 정말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만이라도 한 번 결의를 해서 올바르게 잡아 나가야 되겠구나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싹트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지금 말씀 내용은 뭐 찬성하는 얘기에요? 반대하는 얘기에요?

○尹晚九委員 찬성인데 조금 이따가 그것은 토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俞鎮武 네, 김순권위원장님.

○金順權委員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이고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에 관계된 얘기만 가능한 해주시고, 개인적인 철학적인 의사표현이라든지 입장표현은 토론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질의토론 시간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질의만 해주시고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예. 고윤근위원님.

○高允根委員 고윤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좀 전 우리 동료위원 정창만위원님께서 정치권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국민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화 시대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성북구의 52만의 대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본회의의 엄숙한 장소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사향을 여기서 결의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專門委員 宋 鍊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자는 이야기인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인데, 여기서 전문위원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의사는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전부 해서 결의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그런 차원이자 전문위원이 이야기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羅光洙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俞鎮武 나위원 손 좀 내려주세요. 질의하실 안이 없는 것 같아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서 얘기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없네요」하는 이 있음)

질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정창만위원님.

○鄭昌萬委員 이 문제는 우리 서명을 의원들이 받는 것으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있지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서명을 각자 개별로 하고 싶

은 분들은 하고 의사에 따라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제안을 합니다.

○委員長 俞鎮武 예. 정창만위원님의 서명으로 대체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광수위원님.

○羅光洙委員 나광수입니다. 물론 정창만위원님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기회 이렇게 상정됐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찬반토론 물어서 이것이 좋다면 이것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정창만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서명을 하겠느냐라고 빨리 찬·반토론을 해서 회의를 빨리 효율적으로 종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俞鎮武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高允根委員 고윤근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또 요즘 MBC드라마 제4공화국을 우리가 볼때 사실은 절대로 은폐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저는 과거에 광주항쟁의 비디오테이프를 서로서로 빌려가면서 이 왜곡된 사실을 전하느라고 정말 가슴조이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또 어쩌면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의 열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공화국 6공화국을 청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고윤근위원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윤홍노위원님.

○尹弘老委員 지금 5·18광주 사건은 그간에 광주사태라했다 지금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이 되고, 우리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역사의 비극을 감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국내뿐만아니라 외국에까지 전부 소상히 다 알려져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현시점에서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국이 매우 불안한 상태로 경제활동까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방의회 구의회에서 광주시민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채택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며, 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익이 되겠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연의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신경을 쓰고 또 그런 방향으로 여론도 조성해 나가야 할 즈음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무슨 정치적인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해서 또 이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옳다손치더라도 지금 하나의 의회라는 기관을 명의를 내걸고 결의안을 발표하고 함으로써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정창만위원님께서 제안하는대로 어느 시민이든지 누구든지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참여하고 그 운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현실에 여러가지 사항을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느 일편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유하게 도도하게 흐르고 또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의회의 기관이라는 명칭을 걸고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하면서 내실있게 하고자 하는 분들 개별적으로 서명하고 이렇게 이 안전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俞鎮武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윤홍노위원님. 보류하자는데 찬성을 하시는 거죠?

○尹弘老委員 이 안을 보류해서 다음에 심의하려면 보류 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안을 부결하고 내용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委員長 俞鎮武 제가 지금 메모하기는 정창만위원님이 보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하는데 찬성을 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鄭昌萬委員 위원장님. 거기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보류를 하고 더

차분히 나중에 하고 지금 급하면 서명으로 하자 각자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서명을 해서 가지고 최대한의 여기 특별법 제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서명을 전부 하시고 싶은 분은 서명을 해서 ...

○委員長 俞鎮武 제가 듣기로 정창만위원님과 윤홍노위원님하고 차이가 정창만위원님은 보류해놓고 개인적으로 서명을 받자고 그러는데, 윤홍노위원님은 이것을 부결을 하자고 하니깐 부결하고 보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鄭昌萬委員 아까 제 얘기도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부결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저거하겠지만 이것은 일단 덮어두고 이것은 안전 상정을 본회의에 안하는 것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것도 토의시간에...

○委員長 俞鎮武 그러니까 부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니까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아니, 정창만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은 부결을 해도 안올라가고 보류해도 안올라가고,

○鄭昌萬委員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지말고 전부 개별적으로 서명을 하고싶은 분은 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상부에 올리든지 어디다 올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몰라도,

○委員長 俞鎮武 그렇다라고 하면 윤홍노위원님은 지금 부결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안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鄭昌萬委員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尹弘老委員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개별 서명을 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자는 의도는 같은데, 문제는 계류를 한다든지 보류를 했을 때는 이 문제를 다시 의회에서 어느 일정을 잡아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鄭昌萬委員 마찬가지로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정창만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尹弘老委員 꼭 필요하다면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鄭昌萬委員 글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나도 이것을 일단락 짓고 그리고 나서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보내면 좋지않겠느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羅光洙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말씀하세요.

○羅光洙委員 지금 윤홍노위원님과 정창만위원님 말씀은, 고윤근위원님은 이미 찬성발언을 했고 두 분의 의견은 지금 상충만 됐지 절충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합의하여 한 분 것으로 양보해서 찬반 토론을 여기서 거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두 분 의견이 상충만 됐지 접근이 안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정창만위원 것이냐 윤홍노위원 것이냐,

○委員長 俞鎮武 보류하고 부결하고는 단어가 다르니까요.

○羅光洙委員 두 분중 한분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그 안과 이 쪽 안과

○委員長 俞鎮武 윤홍노위원님 보류하시겠습니까?

○尹弘老委員 제가 타협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안을 다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다시 해야 하는 의회 안전으로 계류된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다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져서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인서명운동으로 전개됐을 때는 계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결을 해서 나중에 이 안이 꼭 필요해서 당연지사라고 했을 때 다시 이안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결하고 개인서명운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입니다.

○鄭昌萬委員 본 위원도 거기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俞鎮武 그 부결에?

○鄭昌萬委員 예.

○委員長 俞鎮武 속기사님! 속기사! 정창만

위원님이 아까 얘기 할 때는 보류하자 라고 했는데 그것을 부결하자로 정정해 주세요. 그럼 부결하신 안에 윤홍노위원님이 찬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유홍선위원님 말씀하세요.

○柳興先委員 본위원은 유홍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5인 운영위원회 개인 다 이야기를 거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다 의견을 듣다보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김민석 우리 간사님부터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뜻을 밝히고 찬반으로 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해서 끝내든가 즉 말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개인의 의사를 다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羅光洙委員 표결로 바로 들어가야지 언제 또...

○委員長 俞鎮武 이렇습니다. 우리 본회의가 9시에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물어볼 만큼 물어봤습니다.

○鄭昌萬委員 위원장님, 본회의가 10시입니다.

(「표결로 하자구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 俞鎮武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鄭昌萬委員 아까 정정을 하시라고요. 본회의가 9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는 10시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본회의가 10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안돈수위원님. 찬·반토론입니까?

○安敦洙委員 예.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홍선위원님께서 각 여러분의 의사를 들어보고나서 찬반 표결을 하든 무기명투표로 하든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俞鎮武 견해 및 찬성이냐 반대이냐는 반드시 발표를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해주시라고요.

○安敦洙委員 이 안전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이 이것을

표결로 해서 이것이 의결이 됐을 때 우리 성북구민 전체에 돌아오는 이익과 이것이 표결이 안됐을 때 예를 들어서 표를 찬반을 물어서 부결이 됐을 때 우리 성북구민 전체에 돌아오는 이익과 이것을 비교해볼때 또 한가지 어떻게보면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북구민 전체가 다 피해자가 아니고 다 가해자가 아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서 어떠한 큰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결로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俞鎮武 지금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재청을 얻어야 되는데, 재청을 아무도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청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윤만환위원장.

○尹晚九委員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유홍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개개인 의사 표시를 여기서 하면 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실 분은 거기에 타당해서 토론하실 분은 하시고 정 없으시면 찬성과 또 반대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기명투표보다는 앞으로는 상임위원에서도 거수투표나 이런 것 보다 무기명으로해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光植委員 발언 한마디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俞鎮武 예. 하세요. 김광식위원님.

○金光植委員 시간이 10시니까 제발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광식위원입니다. 발언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참담한 심정을 몇마디 드리고,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참 어둡고 무시무시한 시절, 그런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또 자유가 속박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자고 우리 의원들끼리 발버둥치면서 애쓰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분명 과거사가 잘못된 것이 있었기에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주지 말자라는 뜻도 공감합니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특별법제정 축

구결의안이 문구가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촉구라는 결의안에서 “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문구를 삭제한 5·18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으로 수정 제의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학살자 처벌 하니까 좀 섬뜩한 마음도 들어가고 하니까 5·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수정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모든 것은 우리 선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 선에서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그렇게 제가 수정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俞鎮武 지금 아까 선언문에 보면 제목이 “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까지를 빼자는 얘기죠?

○金光植委員 그렇죠. “처벌을 위한”을 빼고 광주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으로 포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俞鎮武 “5·18관련 특별법” 그렇게 수정제의안을 내신 거죠?

○金光植委員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委員長 俞鎮武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회의를 하는데 고운근위원님이 김영식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해주셨고 정창만위원님 안에 윤홍노위원님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광식위원님은 원 제목을 수정해서 올리자고 얘기가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세가지 안이 되겠는데요.

○金順權委員 김광식위원님 안을 정확히 말씀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야지,

○金光植委員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결의안 제목이 뭐냐면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을 “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문구를 삭제하고 “5·18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

○委員長 俞鎮武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느 안도 제청은 안나왔어요. 찬성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상 말

숨을 드린 겁니다. 지금 김광식위원 안도 나왔지만 그것이 다시 동의를 얻고 제청을 얻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어느 안도 제청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高允根委員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광식위원님이 수정하자는 안을 지금 현 위치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됩니까? 여기서 바로 돼가지고 가결할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 俞鎮武 수정제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것에 대한 제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안도 제청은 안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임태근위원님.

○任泰根委員 자, 우리 정돈 좀 합시다. 삼선1동 임태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5·18문제 가지고 아침내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5·18문제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저는 김영식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俞鎮武 예, 김광식위원님 안에 대한 동의나 제청 있습니까?

김광식위원님 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의나 제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羅光洙委員 그 부분을 김광식위원님이 다시 한 번 그 대목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金光植委員 우리 이 결의안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5·18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이 문구를 삭제하고 “5·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5·18관련 특별법 제정이면 모든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金順權委員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이런 식으로.

○金光植委員 그렇죠. 그건 그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한거죠.

○尹晚九委員 위원장님, 그걸 할려면 김광식위원님 말씀에 제가 더 수정을 해봅니다. 정 수정을 하려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으로

○金光植委員 예, 그렇게 수정하자 이런 얘기에요, 제 말씀은.

○委員長 俞鎮武 지금 김광식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한,

○尹晚九委員 김광식위원님 말씀에 약간 동의를 하면서 수정결의안 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俞鎮武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특별법”

(「관련자를 빼고 관련」하는 이 있음)

○金順權委員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委員長 俞鎮武 이해하시겠습니까?

○金榮植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俞鎮武 그러면 찬반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羅光洙委員 우선 수정부터 동의를 해주고, 성립됐습니까?

○委員長 俞鎮武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무기명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수로 하죠」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 거수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재석위원 수는 15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분부터,

(「반대부터 해야죠」하는 이 있음)

○尹弘老委員 의안 상정된 순위대로 해야죠. 반대, 찬성을 먼저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안이 어느 것이 먼저 상정됐는가,

○委員長 俞鎮武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거수로써 결정하는 거니까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뭐 관계 있겠습니까? 찬

성하시는 위원님 먼저 손들어 주세요
(거수)

예, 위원장까지 9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
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거수)

그러면 반대의견은 없고 기권으로 나머지
위원님들 간주해도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위원은 기권으로 처리해
주세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 축
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時10分 散會)

○出席委員 15人

俞 鎭 武	金 珉 奭	高 允 根
金 光 植	金 東 殷	金 順 權
羅 光 洙	朴 時 俊	安 敦 洙
柳 興 先	尹 晚 丸	尹 弘 老
任 泰 根	鄭 昌 萬	洪 性 濤

○參席議員

金 榮 植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專 門 委 員	崔 石 根